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434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윤준병 · 이정문 · 박민규
이성윤 · 임미애 · 서영석
양부남 · 박희승 · 안호영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정비
완료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 대비 저조하여 상대적
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국가
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
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해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
라 하천정비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관리에 있
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하천
2.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외 지류·지천 등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하천

⑩ 제9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국가지원 지방하천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제1항 본문 중 “제28조제1항에”를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또는 제28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국가지원 지방하천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를 “국가지원 지방하천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를 “국가지원 지방하천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⑧ (생략) <u><신 설></u></p> | <p>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하천</u> <u>2.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 지류·지천 등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하천</u> <p><u>⑩ 제9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u></p> |
| <p><u><신 설></u></p> | |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⑧ (생략)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

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국가지원 지방하천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또는 제28조제1항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 ⑪ (생략)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 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국
가지원 지방하천을-----

-----.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